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517563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5. 12. 23.

판결 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4,594,578원과 그중 34,076,278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는 원고에게 34,594,578원과 그중 34,076,278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 10. 27. 접수 제8003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부담하는 주채무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8. 4. 3.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소외 은행에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 A가 2014. 12. 4.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4. 21. 소외 은행에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4,575,458원(원금 34,120,000원, 이자 455,4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99,1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34,076,278원(= 34,575,458원 - 499,180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518,3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이율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2014.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같은 달 14일 재산분할(서울가정법원 2014년18557,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원리금 34,594,578원(= 대위변제잔액 34,076,278원 + 채권보전비용 518,300원)과 그중 원금 34,076,278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2015. 4. 21.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이율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15. 10.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각 1/2지분에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었던 것인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2014. 10. 14.에 있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3. 4. 3.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4. 21. 소외 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즉 피고 A의 보증사고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즉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

부동산 목록

1. 서울 동대문구 C 대 162㎡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2층 주택
 - 1층 80.34㎡
 - 2층 78.84㎡
 - 지층 80.98㎡. 끝.